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88 발의연월일: 2024. 12. 13.

발 의 자:위성곤·박지원·김윤덕

주철현 · 진성준 · 허 영

서영교 · 이춘석 · 강유정

문대림 · 김정호 · 박희승

김한규 · 이원택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제주도 본도를 포함한 전국 3,400여 개의 섬은 사람의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유인도서와 무인도서로 구분하여 관리 주체 및 근거법령이 다원화되어있음.

이로 인해 섬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이 부처별·지방자치단체별·용 도별로 분산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, 이는 섬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및 통계자료의 표준화를 저해하 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.

이에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섬 관련 정보와 통계를 관리하는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내륙지역에 비해 열악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섬 발전 사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하려는 것임(안 제16조 및 제17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(실태조사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섬지역(제주도 포함) 주민의 생활수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한국섬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, 방법,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조(섬발전종합정보체계의 구축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섬 발전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·검증·관리하는 섬발전종합정보체계(이하 "섬발전종합정보체계"라 한다)를 구축하여야 한다.
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섬발전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·관리·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.
 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종합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⑥ 그 밖에 섬발전종합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6조(실태조사 등) ① 행정안전 부장관은 섬지역(제주도 포함) 주민의 생활수준 및 복지 향상 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섬지역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관련 기관・법인・단체의 장, 관련 기관・법인・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

<신 설>

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한국섬 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에 사의 시기, 방법, 절차 및 공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섬발전종합정보체계의 구축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·검증·관리하는 섬발전종합정보체계(이하 "섬발전종합정보체계"라 한다)를 구축하여야 한다.
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섬발전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 력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종 합정보체계를 구축·관리·운 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 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종

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청을 따라야 한다.
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종 합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·관 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 탁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섬발전종합정보체 계의 구축·운영·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